

제339회 임시회
2015.04.3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04.30.(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정 영 수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5년 04월 1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0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04월 22일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정함(안 제1조)

-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3)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
- 4) 지원대상자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5)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¹⁾ 등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학생에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읍지역 이하 초·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지원 대상” 을 도내 공·사립학교 및 국립학교로 하고, 안 제3조 “체험학습” 은 수학여행, 수련활동으로 하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5조 매년 지원계획 수립 등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은
- 2011년부터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²⁾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의

1) 저소득층학생: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2/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읍이하 초·중학생: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 제31조

2) 수학여행비: 초 10만원, 중 11만원, 고 30만원, 수련활동비: 초 6만원, 중 7만원, 고

경우 학생 8,213명을 대상으로 1,004,460천원을 지원하였음.

- 조례가 제정되면,

- 2015년도는 특수교육대상자, 면지역(초·중)학생, 저소득층(초·중·고) 학생 등 13,246명에게 1,488,110천원,
- 2016년도부터는 읍지역(초·중)학생 포함 26,975명에게 2,654,600천원을 지원할 예정임

※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비용 추계서

○ 본 사업은 2010.7.26.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방침에 따라 2015년 2월 현재 전국 7개 시·도에 조례제정³⁾이 되어있고, 15개 시·도에서 저소득층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또는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그 중 6개 시·도에서는 일반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읍지역 이하 초·중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8만원

3) 광주, 제주, 경남, 강원, 세종, 전북, 울산교육청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현장체험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수련활동

제4조(지원대상자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201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1.6., 일부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1.29>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25호, 2013.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

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80호, 2015.2.3., 일부개정]

제8조(부설학교) ①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9.3.>

[별표 5] <개정 2009.9.3>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제8조제1항관련)

학 교 명	부 설 학 교 명	위 치
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	강 원 도
강 원 대 학 교	부설고등학교	강 원 도
경 북 대 학 교	부설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대 구 광 역 시
경 상 대 학 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경 상 남 도
공 주 대 학 교	부설유치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충 청 남 도
부 산 대 학 교	부설고등학교	부 산 광 역 시
전 남 대 학 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광 주 광 역 시
전 북 대 학 교	부설고등학교	전 라 북 도

학 교 명	부 설 학 교 명	위 치
제 주 대 학 교	부설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충 북 대 학 교	부 설 중 학 교 부 설 고 등 학 교	충청북도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충청남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부산광역시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전라북도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경상남도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충청북도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강원도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81호, 2015.2.3., 일부개정]

제9조(부설학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를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전원, 면지역 이하 초·중학교 학생 전원, 2016년부터는 읍지역 초·중학교 학생 전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2. 비용 발생 요인

- 교육부 방침 및 교육감 공약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2015~2019년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 인원 추계>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특수교육대상자		1,607	1,665	1,612	1,554	1,554	7,992
면지역(초,중) 학생		6,204	6,952	7,255	7,393	7,817	35,621
읍지역(초,중) 학생	0	0	13,410	13,610	13,606	13,756	54,382
저소득층(초,중,고) 학생	8,213	5,435	4,948	4,765	4,917	4,917	24,982
계	8,213	13,246	26,975	27,242	27,470	28,044	122,977

※ 2014년은 예산편성 인원, 2015~2019년은 초·중학생 배치계획(행정과) 참조 인원

※ 유아특수교육과-3665(2015.4.2.)호 「국립학교 현장학습 관련 업무 자료 요청」

3. 관련조문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저소득층 학생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
- 읍이하지역 학생 지원 :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기획관-9146, 2014.10.6.)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도별 해당학생 추계 및 지원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연도별 추계금액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학여행비	특수교육대상자		161,510	167,890	163,720	156,000	156,000	805,120
	면지역(초,중) 학생		321,480	360,010	375,950	383,440	406,670	1,847,550
	읍지역(초,중) 학생		0	705,080	714,940	714,160	722,050	2,856,230
	저소득층(초,중,고) 학생	685,390	545,890	516,240	497,160	523,740	523,740	2,606,770
	계	685,390	1,028,880	1,749,220	1,751,770	1,777,340	1,808,460	8,115,670
수련활동비	특수교육대상자		58,710	60,670	58,730	56,490	56,490	291,090
	면지역(초,중) 학생		202,780	226,680	236,470	241,200	255,950	1,163,080
	읍지역(초,중) 학생		0	436,880	442,740	442,040	446,930	1,768,590
	저소득층(초,중,고) 학생	319,070	197,740	181,150	174,080	180,340	180,340	913,650
	계	319,070	459,230	905,380	912,020	920,070	939,710	4,136,410
합 계	특수교육대상자		220,220	228,560	222,450	212,490	212,490	1,096,210
	면지역(초,중) 학생		524,260	586,690	612,420	624,640	662,620	3,010,630
	읍지역(초,중) 학생		0	1,141,960	1,157,680	1,156,200	1,168,980	4,624,820
	저소득층(초,중,고) 학생	1,004,460	743,630	697,390	671,240	704,080	704,080	3,520,420
	합 계	1,004,460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 수학여행비 지원단가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1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수련활동비 지원단가 : 초등학생 6만원, 중학생 7만원, 고등학생 8만원

※ 특수학교 학생은 학교급별 지원단가 적용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응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보통교부금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세 출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현장체험학습비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재원 조달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의존 재원	소 계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488,110	2,654,600	2,663,790	2,697,410	2,748,170	12,252,08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채입금 민자예비금							